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0년 10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 절차 착수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 현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

■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 현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 특히 합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① (처벌·허용 규정 일원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 조항과 허용 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 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안 제 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헌재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이견(4인) 중]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 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② (허용 기간·사유 차등 규정)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습니다.

○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바(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①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 근친관계 간 임신, ④ 임부 건강 위험

-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재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 의견(4인) 中]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단순위헌 의견(3인) 中]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중략)...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 중 적어도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진 낙태에 대하여 처벌하는 부분은 그 위헌성이 명확하여 처벌의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지는 낙태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③ (절차적 허용 요건 설정) △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

-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 상담·숙려 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 관련 논란 방지

[헌재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 의견(4인) 중] 임신한 여성이 결정가능기간 중에 낙태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충분히 숙고한 후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아의 생명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중략)...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우리 재판소가 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모자보건법〉

- ①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 ② (사회적 상담 지원)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하여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③ (세부적 시술절차 마련)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④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당도 추진합니다.

■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7363, 법무부 형사법제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2020.10.7.

II

**임산부가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 제15회 임산부의 날 유공자 포상 및 간담회 개최 (10.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5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컨벤션 호텔에서 유공자 포상 및 간담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2005년 임산부의 날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올해 기념행사는 ▲임산부의 날 유공자 포상,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 영상공모전 수상작 상영, ▲임산부 배려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유공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행사 규모 및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m)·마스크 착용·체온측정·손소독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그간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기관 및 개인이 대통령 표창(1), 국무총리 표창(2) 등 총 3점\*을 수상하였다.

○ 이 중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임산부 배려석에 인형을 비치하고, 4개 국어(한·영·중·일)로 임산부 배려와 관련된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 배려를 유도하여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붙임 2> 제15회 임산부의 날 유공 수상자 및 공적 요지 참고

■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에서 임산부 및 일반인 3,000명(임산부 1,500, 일반인 1,500)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임산부 중 배려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9%, 배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나타났다.

\* 조사 기간: '20.9.14 ~ 9.23.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임신육아종합누리집(사이트) 아이사랑, 베이비 뉴스 등)

- 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가정에서는 가사 분담(청소, 빨래, 식사 등)이 59.9%,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 35.8%, 일상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가 46.5% 등으로 나타났다.
- 반면, 배려받지 못한 사유로는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지 티가 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례가 54.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로 임산부와 일반인 모두 임산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인식 제고를 위해 ‘임산부 배려인식 교육(임산부 64.6%, 일반인 6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보건복지부 최중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주변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보다 세심한 고민과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736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0.10.8.

Ⅲ

**국립재활원,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 ‘현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 방향 논의’ -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2020년 10월 21일(수), 국립재활원 나래관 증강당에서(온라인 화상회의) 개최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현장 참석자 최소화, 손 소독제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

○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은 「돌봄로봇 증개 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책기반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은 세개의 분과(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은, 국립재활원의 주제발표로 시작하여,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송원경 과장이 ‘돌봄로봇 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최동일 연구원이 ‘돌봄로봇 서비스 관련 공적급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마지막 주제발표로 고려대학교 이완정 교수가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장 수요 연계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 방향’(심포지엄 주제)에 관하여 정책기반 관련 전문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지영 연구위원, 나사렛대학교 공진용 교수,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 중원대학교 김미정 교수가 각 관련된 주제로 발제하였다.

○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덕원자력포럼 김승호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김은영 본부장,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 센터장, ㈜크레이더스 이의철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 위원, 돌봄로봇증개연구사업 과제책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돌봄로봇 서비스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공적급여와의 연계 방안과 돌봄로봇의 수요지향적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현장 수요 기반 돌봄로봇 서비스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돌봄을 받는자와 돌봄을 주는자의 어려움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당사자와 과제 수행자,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포지엄과 돌봄로봇 연결망(네트워크) 공개토론회(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돌봄을 받는자와 돌봄을 주는자 모두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돌봄로봇 서비스 품질 제고와 향후 돌봄로봇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7070,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술연구과, 국립재활원, 2020. 10.21.

## IV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 10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 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 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제도 개선 기대 효과(사례)

- (사례1)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장모 씨(남, 28세)는 현재 자녀(남, 1세)의 모(母) 이모 씨(여, 25세)를 만났다. 하지만 출산 후 우울증을 겪던 이모 씨는 가족 곁을 갑자기 떠났다. 홀로 남겨진 장 씨는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넘게 결정을 못 받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 씨는 법원의 확인 전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전자검사결과 및 친생자 확인신청서와 접수증을 제출하여 신청을 하였다. 장 씨는 아동의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받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 (사례2) 김모 씨(남, 36세)는 올해 2세 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지역 내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근무시간 동안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으나,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어 보육료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제도가 개선되어 출생신고 전에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아들의 출생신고를 위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과 걱정이 컸으나, 출생신고 전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되어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사례3) 아이의 나이가 어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정모 씨(남, 32세)는,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는 상태다. 정모 씨는 엄마 없이 홀로 본인의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음에도,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제도가 개선되면서 법원의 확인 전에도 가정양육수당 등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741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 2020.10.19.

V

**‘쉬어도 괜찮아’,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 사회보장위원회, 강선우 의원실,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10.2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삶의 가치와 미래 건강보장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보장위원회, 강선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회장 김형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0월 23일(금) 13:30부터 16:30까지 열린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토론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참석, 그 외 방청은 영상 생중계(Youtube)를 통해 원격 참석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미래 사회보장 정책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건강, 고용·노동 등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 특히, 코로나19로 건강한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의 중요성, 쉬지 못하게 하는 경제·사회적 조건, 현 실태 및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연구하였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결과를 논의한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전체 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유튜브 생중계 인터넷 주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bit.ly/391leXy>

■ 이번 학술대회는 ‘쉬어도 괜찮아: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 주제발표 시간에는 최영준 교수(연세대), 김주연 교수(서울시립대), 이동현 교수(연세대), 김기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최영준 교수는 “쉬어도 괜찮은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쉬지 못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며, 보건·복지제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를 제안한다.

- 김주연 교수는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라는 주제로, ‘쉼’의 유형,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쉼’ 부족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다.
- 이동현 교수는 “미래사회의 쉼을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미래사회 ‘쉼’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보건의료기술 및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 김기태 박사는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라는 주제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사례를 통해 비임금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 종합토론에는 정형준 정책위원장(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최민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성원 연구위원(국회 미래연구원)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한다.

■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쉼’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쉼’이라는 담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743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2020.10.23.

VI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가이드라인)”발간 -
- 비만 예방 홍보(캠페인) “건강생활실천 영상공모전”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걷기 활성화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10월 26일(월)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가이드라인)(이하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성인 비만율 ‘14년 30.9%→’18년 34.6%)하고 신체활동은 감소(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4년 58.3%→’18년 47.6%)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신체활동을 줄이고 비만을 증가시킬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항 목		현 황
성인비만율 (BMI 25이상)	전체	’14년 30.9% → ’18년 34.6%
	남성	’14년 37.8% → ’18년 42.8%
	여성	’14년 23.3% → ’18년 25.5%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4년 58.3% → ’18년 47.6%
걷기 실천율		’14년 41.7% → ’18년 40.2%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14년 7.5시간 → ’17년 8.2시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03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9%는 “코로나 전에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하였고, 32.1%\*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변화에 대해 “체중증가”라고 답하였다(「건강투자 인식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 코로나19 이후 생활에 대해 가장 큰 변화(3순위까지 선택)

○ 걷기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천할 수 있다.

-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 감소, 비만 위험 감소, 8대 암\* 및 심장병·뇌졸중·치매·당뇨병 등 질환 발병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

\* 유방·대장·방광·자궁내막·식도·신장·폐·위암

- 또한, 걷기는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신체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 걷기 가이드라인은 걷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위원장:강재현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대한걷기연맹, △대한걷기협회, △대한직장인체육회걷기협회, △한국워킹협회 참여

■ 걷기 가이드라인은 성인에게 필요한 걷기량, 올바른 걷기방법, 걸을 때 주의사항 등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걷기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걷기 권장량) 1주일에 최소 빠르게 걷기(중강도 신체활동/걸으면서 대화 가능하나 노래는 불가능) 150분 혹은 매우 빠르게 걷기(고강도 신체활동/걸으면서 대화 불가능) 75분을 권장한다.

- 빠르게 걷기와 매우 빠르게 걷기를 섞어서 실천할 경우 매우 빠르게 걷기 1분이 빠르게 걷기 2분임을 인지하고 걸으면 된다.

- (올바르게 걷기) 올바른 걷기 자세와 걷기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걷기 자세, 발의 동작, 걸음걸이, 팔 동작 등은 걷는 속도나 에너지 넘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

- 바른 자세로 걸으면 심호흡이 가능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며 허리나 골반의 통증을 방지할 수 있다.

- ① (시선) 10-15m 전방을 향한다
- ② (호흡)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신다
- ③ (턱)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긴다
- ④ (상체) 5도 앞으로 기울인다

- ⑤ (팔)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든다. 팔꿈치는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린다
- ⑥ (손) 주먹을 달걀을 쥔 모양으로 가볍게 쥔다
- ⑦ (몸) 곧게 세우고 어깨와 가슴을 편다
- ⑧ (엉덩이) 심하게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 ⑨ (다리) 십일자로 걸어야 하며 무릎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걷는다
- ⑩ (체중) 발뒷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이동시킨다
- ⑪ (보폭) 자기 키(cm)-100 혹은 자기 키(cm)에 0.45를 곱하고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걷기 전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하며, 걷기를 시작할 때는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높이고 걷기를 끝낼 때는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다.
-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간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잠시 벗고 휴식을 취하기 등의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걷기를 당부드린다.

○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도움말) 버스·지하철 이용 직장인은 미리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기, 걷기 친구 만들기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걷기 가이드라인 책자와 영상(가이드라인 교육영상 1종, 실내신체활동 교육영상 3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실(<https://www.khealth.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변화를 주제로 “건강생활실천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습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고자 한다.

○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에 관심 있는 누구나(내외국민, 남녀노소, 개인/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고, 2020년 10월 26일(월)부터 2020년 11월 15일(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high-five.kr](http://www.high-five.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	내용	예시
건강·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건강식생활 노하우</li> <li>•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된 식습관으로 달라진 몸과 마음의 건강</li> <li>• 편식을 잡는 나만의 식습관 교육방법</li> </ul>
신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외에서 따라할 수 있는 신체활동 방법</li> <li>• '일상이 운동이 되다'를 주제로 한 신체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에서 따라하는 건강댄스</li> <li>• 신체활동 습관으로 나타난 몸과 마음의 변화</li> </ul>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걷기 가이드 라인이 건강생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걷기 실천을 통해 몸 과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활동과 신체활동이 줄어든 만큼 국민들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가이드라인과 실내 신체활동 교육영상을 개 발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체활동 홍보매체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한눈에 보는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 한눈에 보는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1주일에 최소  
**150분**  
빠르게 걷기  
(걸으면서 대화 가능 / 노래 불가능)



혹은 / 합쳐서

빠르게 걷기 2분 = 매우 빠르게 걷기 1분

1주일에 최소  
**75분**  
매우 빠르게 걷기  
(걸으면서 대화 불가능)



**■ 걷기의 10대 효과**

1 모든 사망위험 감소	2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 감소	3 고혈압 위험 감소
4 제 2형 당뇨병 위험 감소	5 비만 위험 감소	6 우울증 위험 감소
7 치매위험 감소	8 인지기능 향상	
9 수면의 질 향상	10 8가지 암 위험 감소 (위암, 대장암, 방광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백반, 위암)	



**호흡** :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시선** : 10~15m 전방을 향한다.

**발** :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목치는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실력 구분한다.

**손** : 주먹을 달걀을 원 모양으로 가볍게 쥐고.

**영양** : 영양제를 심하게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대역** : 심할수록 걸어야 하며 무릎 사이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걷는다.

**배중** : 뒤꿈치로 시작으로 밟아, 발가락 손으로 이동시킨다.

**■ 걸을 때 주의하세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걷기
- ✓ 걷기 전후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실시하기
- ✓ 걷기 시작 할 때는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속도 올리기
- ✓ 끝낼 때는 서서히 속도 늦추기
- ✓ 더울 때는 실내에서 걷기
-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나쁨)는 실내에서 걷기
- ✓ 걷기 편한 운동화 착용하기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744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실천팀, 2020.10.26.